



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세버스 차령 관련 유의사항 알림

1.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귀 시·도 및 연합회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부에서는 지난 '20.9.1.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2(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조건)를 개정(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 1년 연장)하였고, 지난 '21.8.31.에는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버스의 기본차령을 기존 9년에서 11년으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연장차령 2년 적용 시 최대 차령은 13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964호, 2021.8.31.)에 따라 별표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차령 기간이 더해진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한 차령은 1년이므로, **현행 전세버스의 최대 차령은 13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964호, 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4조제1항 본문 및 이 영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전세버스운수사업용 승합자동차와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전세버스운수사업용 승합자동차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합자동차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더해져 진행한 전세버스운수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 기간은 같은 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 기간이 해당 기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2호에 따라 연장되어 진행한 차령 연장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의 기간은 같은 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 기간이 해당 기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연장된 차령 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1. 전세버스운수사업용 승합자동차: 2년(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차령 기간이 더해진 경우에는 1년)

2. 특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합자동차: 6개월

④ 다음 표에 해당하는 전세버스운수사업용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합자동차가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에 받는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 차령이 연장되기 전까지는 해당 자동차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을 넘겨서 운행하지 못한다

3. 현재 일부 시·도에서 전세버스의 전체 차령을 '20년도 당시 한시연장된 1년을 포함하여 최대 14년으로 판단하고 운송사업자에게 안내 및 행정처분(차령 연장)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재차 안내하오니, 관할관청 및 관계기관에서는 차령 연장 시행에 따른 착오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고, 전국전세버스운수사업

조합연합회에서는 전국 조합 및 운송사업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령을 14년으로 착오하여 운송사업자에게 1년 연장허가 및 안내가 이루어진 시·도에서는 현황을 파악하여 **대상 차량 정보 등을 우리 부로 회신(~3.29.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버스정책과장), 부산광역시(버스운영과장), 대구광역시(버스운영과장), 인천광역시(택시운수과장), 광주광역시(대중교통과장), 대전광역시(버스정책과장), 울산광역시(버스택시과장), 세종특별자치시(교통과장), 경기도지사(버스정책과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교통과장), 충청북도지사(교통철도과장), 충청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교통정책과장), 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 경상북도지사(교통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대중교통과장),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주무관 **최원재** (시설사무관) **교육** (교통서비스정책과장) **이주열** (교통서비스정책과장) 전결 2024. 3. 14.

협조자

시행 교통서비스정책과-1714 (2024. 3. 14.)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622호 교통서비스정책과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829 팩스번호 044-201-5522 / adu277@molit.go.kr / 비공개(5)